

—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6월 1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6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6월 28일

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문광부 및 경상북도의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입장권 수수료 개선요청에 의하여 수수료 조정
- 구미시대표선수 숙소 및 훈련장에 대한 대관료 감면규정으로 선수육성의 여건마련

다. 주요내용

- 입장료 및 대관료 조정
 - 공연 유료입장권 수수료 20%⇒ 10% 조정
 - 대관료체계 공휴일(토·일)별도 50%가산⇒ 50% 포함한 금액으로 통합조정
 - 구미시대표선수 숙소 및 훈련연습장 대관료 감면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 제11조 및 제13조
- 체육시설운영조례 개정요청
 -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입장권수수료 인하요청
⇒ 새마을82100-11970 (2003.11.17)호와 관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본 조례안은 공연 유료입장권 수수료 인하 및 대관료체계를 조정하고,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